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국장 김종호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상위법령과 일치
(안 제4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개정
(안 제9조의3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4조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을 “25명 이내”를 “15명 이상 25명 이하”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“부구청장이 되며”를 “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,
 - 안 제9조의3제2항 중 구청장의 임명·위촉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”를 “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 정비하였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함.

(안 제4조 및 안 제9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감사담당관 개선의견 통보 및 반영

-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구청장의 위원장 임명 시기 명시

3) 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14. ~ 10.10. / 20일 이상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5명 이내”를 “15명 이상 25명 이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구청장이 되며,”를 “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,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2항 중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”를 “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,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,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5명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구청장이</u>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~ ⑪ (생략)</p> <p>제9조의3(공동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은 부구청장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----- ----- --<u>15명 이상 25명 이하</u>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3(공동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